부산광역시 사하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·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6. 11. 20 ---------- 사하구청장

나. 회 부 일 자 : 2006. 11. 21

다. 상 정 일 자 : 2006. 12. 22 (제144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위원회 상정, 원안의결)

2. 제안설명 요지(청소행정과장 하태생)

가. 제안사유

「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」 제9조의2제2호의 개정으로 「식품위생법」 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 영업장의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자의 범위를 조례로 정하고자 함.

나. 주요골자

「식품위생법」 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 영업장 중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기준 마련 (안 제2조제2호)

3. 참고사항

○ 관계법령 : 「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」

○ 입법예고 : 2006. 10. 11 ~ 10. 31 ▷ 의견제출 없음

4. 전문위원 검토의견

○ 본 조례 개정건은,「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」에 대한 감량의무조항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지난 2004. 8. 11부로 신설되고 2005. 12. 31부로 개정됨에 따라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 영업장 등 음식물쓰레기 다량 배출원에서의 재활용 및 자가처리 책무를 의무화하도록 법정화 함으로써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을 촉진시키고 생활화하여 행정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고

○ 감량의무사업장 범위를 음식점은 영업장 면적이 125㎡ 이상인 음식점에서 165㎡ 이상인 음식점으로, 그리고 100인 이상 집단급식소와 호텔업, 농수산물 도매시장 등으로 확대 조정함으로써 주민들의 부담경감 및 형평성 유지와 능률성 확보에 크게 기여 한다고 판단되며

○「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」등 관련 법령에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범위에 관한 위임규정이 명시되어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

○ 위 조례 개정은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됨.

5. 질의답변요지 : 생 략

6. 토 론 요 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의결